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영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4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8.

발 의 자 : 김영배 · 이해식 · 장종태
정준호 · 이학영 · 한정애
고민정 · 장경태 · 이주희
최기상 · 손명수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으나,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의지, 재정, 행정력에 따라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.

또한, 아동의 삶은 보육, 교육, 복지뿐만 아니라 주거, 교통, 안전 등 다양한 행정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, 각 분야의 정책이 아동정책의 기본이념 및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 3 신설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3(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(이하 “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계획에 따라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

행, 전달체계의 구축·운영, 협력체계의 구축, 지원 내용·절차 등에
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1조의3(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관련 정책의 수립·시행에 아동의 참여를 보장하고 「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」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아동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,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의 기준을 마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계획(이하 “조성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성계획에 따라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하며, 이 경우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</u>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한 시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조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전달체계의 구축·운영, 협력체계의 구축, 지원 내용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